



장사는 농이촌 행복한 국민

## 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7. 4  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
과 장 : 최 명 철  
사무관 : 임 현 규  
전 화 : 500-1928  
팩 수 : 3P  
별첨자료 : 있음(2P)

이 자료는 2011년 7월 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농식품부, 식품산업진흥정책의 추진동력 확보

-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-

#### 〈 주 요 내 용 〉

- ◇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산업발전의 기반 마련
- (식품산업진흥 시책 추진근거 마련 및 보완) ①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·지원 근거 마련, ②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의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을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이관하여 법률체계 일원화
  - (식품 품질관리 강화) ①전통식품,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개선, ②우수식품인증기관 관리 개선, ③ 식품명인 표시 허위 사용금지

□ 농림수산식품부(장관 서규용)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(정부제출안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6.23)하여 공포후 1년 경과 뒤에 시행된다고 (일부 규정 6개월 후 시행) 발표하였다.

○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크게 ①식품산업진흥 시책 추진근거 마련 및 보완, ②식품 품질관리 강화 등이 있다.

□ 첫째, 식품산업 진흥 시책 추진근거 마련 및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①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 지정·지원 근거 마련, ②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의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을 「식품산업진흥법」으로 이관하는 것이 있다.

○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한식 관련 법인, 단체,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지정하여 한식세계화 사업을 위탁·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 법인이나 단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·창의성을 활용하고, 한식세계화의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\* 일본의 경우도 정부에서 민간 비영리단체인 '일본 JRO(일본식 레스토랑 해외보급 추진기구)'에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일본음식 세계홍보, 해외 일식당 지원 등 사업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음

\* 현재 한식세계화사업을 위탁하여 수행 중인 한식재단, 농수산물유통공사,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 예정임

○ 또한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의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을 농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「식품산업진흥법」으로 이관시켜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.

□ 둘째로, 식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①전통식품,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제도 개선, ②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리 개선, ③식품명인 허위 표시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하였다.

○ 특히, 농식품부가 인증한 전통식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품질심사를 실시하고 식품명인 아닌 자가 식품명인 표시를 사용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(징역 3년이하, 벌금 3천만원이하) 등을 마련하며,

○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므로써 식품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.

\* 우수식품인증기관 : 식품 산업표준인증, 전통식품 품질인증, 유기농식품 인증업무와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있음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식품산업진흥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식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## 붙임 법률안 주요 내용

□ (한식세계화추진기관 지정근거 마련)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, 단체 또는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2신설)

○ 이에 따른 지정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

□ (수산물가공 관련 조항 이관) 법률체제 일원화를 위해 「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가공업 분야 및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통합(안 제19조의4~제19조의6 신설)

□ (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)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업체에 대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 및 제4항 신설)

□ (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간소화) 현재 운영 중인 정기심사 제도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유효기간(1년)을 유지할 실익이 적어 유효기간 설정을 폐지하고 정기심사는 매년 1회로 법률에 규정(안 제23조제2항 삭제)

□ (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) 부실 인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(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신설)

○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,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전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, 우수 식품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처분근거를 신설함

□ (허위 식품명인 표시제재) 식품명인 명칭 사칭으로부터 명인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해 식품명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·가공·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의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(안 제2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)